



일본의 “수의사법”(獸醫師法)과 “수의료법”(獸醫療法) Ⅱ

김 병 성
金炳星

전 : 농림부 부산 기축검역소, 농림부 축정국 수의과, 대한수의사회사무처
현 : 대한수의사회 고문

수의료법(獸醫療法) (1992년 5월 20일 법률제46호)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사육동물의 진료 시설의 개설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수의료의 확보를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률에서 <사육동물>이라함은 수의사법(1949년 법률제186호)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진료시설의 개설의계속) 진료시설을 개설한자(이하<개설자>라한다)는 그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진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진료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혹은 계속한 사항을 변경하였을때에도 같은것으로 한다.

제4조(진료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진료 시설의 구조설비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여야한다.

제5조(진료시설의 관리) 개설자는 스스로가 수의사로서 그 진료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 수의사에게 그 진료시설을 관리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함)가, 그 구조설비, 의약품 기타의 물품의 관리와 사육동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서 정한다.

제6조(진료시설의 사용제한명령등) 시·도지사는 진료시설의 구조설비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진료시설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준수되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개설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서,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 시키며, 또는 기한을 정하여서 수리 혹은 개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수 있다.

제7조(왕진진료자 등에 대한 적용등) 왕진만에 의하여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자기 스스로가 실시하는 수의사와 왕진만에 의하여 수의사에게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실시하게 하는자(이하 「왕진진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주소를 진료시설로 간주하여,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진료용기기 기타의 물품(이하 「진료용기기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또는 빌려서 이것을 사용하는 왕진진료자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중 「진료시설」로 되어있으며, 또한 「구조설비, 의약품기타 물품의 관리와 사육동물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료용기기등」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진료용기기등에 관하여 전항에서 바꾸어 읽어서 준용하는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준수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료용기기등을 소유하거나, 또는 빌려서 이것을 사용하는 왕진진료자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수 있다.

제8조(보고의 징수와 현장검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설자 혹은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그 직원에게, 진료시설에 입회하여, 그 구조설비,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기타 사항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왕진진료자등 또는 전조제2항에서 바꾸어 읽어서 준용하는 제5조제2항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검사를 위하여 진료용기기등,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것을 제출시킬수가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며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가 개설하는 진료시설의 특례) 국가가 개설하는 진료시설에 대한 이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각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할 수가 있다.

제10조(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기본방침」이라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의료의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나. 진료시설의 정비와 수의사의 확보에 관한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다.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라. 진료시설 기타 수의료에 관련이 있는 시설의 상호간의 기능과 업무의 제휴에 관한 기본적사항
- 마. 수의료에 관계되는 기술향상에 관한 기본적사항
- 바. 기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중요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상황의 추세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事)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계획) 시·도는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에서의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시·도계획」이라함.)을 정할수 있다.

② 시·도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내용은, 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진료시설의 내용 기타 진료시설의 정비에 관한 목표

- 나. 수의사의 확보에 관한 목표
- 다.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라. 상호간의 기능과 업무의 제휴를 실시 하는 시설의 내용과 그 방침
- 마. 진료상 필요한 기술연수의 실시와 그 외의 수의료에 관한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시·도는 시·도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계획에서 정하는 전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시·도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단체의 협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사가 조직하는 단체,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수의료의 제공, 연수의 실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설비등의 제공) 개설자와 관리자는, 시·도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그 진료시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설비, 기계와 기구를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수의사의 진료,

연구와 연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진료시설정비계획의 인정) 시·도 계획에 따라 진료시설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진료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진료시설정비계획」이라함.)을 작성하여,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진료시설 정비계획이 적당하다는 내용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② 진료시설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진료시설의 정비의 목표

나. 진료시설의 정비의 내용과 실시시기

다. 진료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소요금액과 그 조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진료시설 설비계획이 시·도계획과 대조하여 적절한 것이며 또한, 축산업진흥을 위한 진료시설의 정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3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진료시설 정비계획의 인정과 그 취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림어업금융공고부서의 자금의 대부) 농림어업금융공고는 농림어업금융공고법(1952년 법률제355호)제18조제1항,

제4항과 제5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과 부칙제2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이외에, 전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 인정한 내용과 관계되는 진료시설 정비계획에 따라서 진료시설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기 및 저리의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융통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부를 할수 있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금의 대부의 이율상환기간과 거치기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농림어업금융공고가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금융공고의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금의 대부와 관련되는 농림어업금융공고법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1호와 제36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중「융통법」으로 되어 있는것은 「수의료법」으로, 동법제36조제3호중 「부칙제2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의료법」으로, 동법제36조제3호중 「부칙제23항」으로 되어 있는것은 「부칙제23항」과 수의료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광고의 제한) 누구든지 수의사(수의사이외의 왕진 진료자를 포함한다.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 있어서서 같음.) 또는 진료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그 기능, 의료법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의 전문과 명

나. 수의사의 학위 또는 칭호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사 또는 진료시설의 업무에 관한 기능, 의료법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중, 과고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광고를 할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광고의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농림부령을 제정 하거나 혹은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수의사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8조(청문)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문에 있어서는 당해 명령에 관계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또한 증거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경과조치) 이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서 그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수 있다.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출을 아니 하거나 또는 허위로 계출을 한자.

나. 제5조제1항(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자

다. 제8조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출하지 아니한자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관계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의 위반 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항의 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수의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제45호. 이하「개정법」이라한다.)의 시행일 부터시행

한다(1992년 9월 1일).

제2조(경과조치) 개정법에 의한 개정전의 수의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한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한자로 본다.

제3조(가축개량증식법의 일부개정) 가축개량증식법(1950년 법률제20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3호중 「수의사법」 아래에 「수의료법(1992년 법률제46호)」를 추가한다.

제4조(각성제취체법의 일부개정) 각성제취체법(1951년 법률제2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7제6호중 「가축진료시설」을 「사육동물진료시설(수의료법(1992년 법률제46호)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하며, 왕진만에 의하여 수의사에게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자의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로 고치고, 「또는출장」을 삭제하며, 「가축의」를 「사육동물의」로 고치고, 「진료업무를」의 아래에 「스스로」를 추가하고,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고치고, 동조제8호중 「또는 가축」을 「또는 수의료법제55조제2항(동법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자(이하「수의관리자」라한다.)」혹은 사육동물(동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함. 이하같

음.)으로, 「가축진료시설」을 「사육동물진료시설」로,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고치며, 동조제11호중 「가축」을 「사육동물」로,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해당자」를 「해당되는자」로 고친다.

제30조의9제3호와제30조의11제3호중 「가축」을 「사육동물」로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고친다.

제30조의12제1항의 각호에 열거한 이외의 부분중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가축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사육동물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그 수의사관리자」로,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고치며, 동항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사육동물진료시설의 수의사관리자에 있어서는 그 시설, 왕진만에 의한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스스로 실시하는 수의사에 있어서는 그 주소

제30조의15제1항중 「가축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사육동물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그 수의사관리자」로 고치고, 동항제4호중 「가축진료시설」을 「사육동물시설」로 「가축의」를 「사육동물의」로 고치고, 동조제4항중 「가축진료시설」을 「사육동물진료시설」로 고친다.

제31조중 「각성제원료」를 「각성제 또는 각성제원료」로, 「각성제제조업자, 각성제사용기관」을 「각성제제조업자, 각성제사용기관」

으로, 「각성제연구자」를 「각성제연구자」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가축 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사육동물진료시설에 있어서는 그 수의사관리자」로 고친다.

제32조제2항중 「각성제원료」를 「각성제원료」로 고치고, 「또는출장」을 삭제하며, 「가축」을 「사육동물」로 고치며, 「진료업무를」의 아래에 「스스로가」를 가하고, 「의심되는」을 「의심이 되는」으로 고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률의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각성제취체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마약과향정신약취체법의 일부개정) 마약과 향정신약취체법(1953년 법률제1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0호중 「가축진료시설(왕진만에 의하여 가축의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사육동물진료시설(수의료법 1992년 법률제46호)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하며, 동법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왕진진료자등」으로, 「혹은 가축진료시설」을 「혹은 사육동물진료시설」로 고친다.

제7조(약사법의 일부개정) 약사법(1960년 법률제14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실시장소」를 「실시하는

장소」로, 「겸하여서 실시하는」을 「겸하여 실시하는」으로, 「가축진료시설」을 「사육동물 진료시설(수의료법(1992년 법률제46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하며, 왕진만에 의하여 수의사에게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자의 주소를 포함함. 이하같음.)」으로 고친다.

제26조제2항과 제3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과 제77조의2중 「가축 진료시설」을 「사육동물진료시설」로 고친다.

제8조(약제사법의 일부개정) 약제사법(1960년법률제14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가축진료시설의」를 「사육동물 진료시설(수의료법「1992년법률제46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하며, 왕진만으로 수의사에게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하게 하는 자의 주소를 포함함. 이하이조에 있어서 같음.)의」로, 「가축진료 시설에서」를 「사육동물진료시설에서」로 고친다.

제9조(농림부설치법의 일부개정) 농림부 설치법(1949년법률제15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6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76의2 수의료법(1992년 법률제46호)의 시행에 관한 것.

**수의료법시행령(獸醫療法施行令)
(1992년8월7일 각령제274호)**

제1조(국가가 개설하는 진료시설에 관한 특례) 국가가 설치하는 대학의 수의학에 관한 학부 또는 학과의 부속시설(이하「국립대학 부속시설」이라한다.)인 진료시설에 관한 수의료법(이하「법」이라한다.)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표의 상란에 기재하는 법의 규정중의 자구로 동표의 가운데란에 기재하는 것은, 각각 동표의 하란에 기재하는 자구와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진료시설을 개설한자(이하 교육부장관은, 진료시설의 표의 「개설자」라한다.)는,

그

당해진료시설의 소재지를 농림부장관 관할하는 시·도지사

계출하여야 통지하여야

계출한 사항 통지한 사항

제5조 개설자는, 스스로가 수의 교육부장관은

제1항 사로서 그 진료시설을 관
리하는 경우이의

제6조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그 개설자 교육부장관

사용을 제제하거나 혹은 사용을제한 혹은 정지를
금지하며, 또는 기한을 정 요청하거나, 혹은 기한을
하여, 수리 또는 개축을 하 정하여, 수리 또는 개축을
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것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한다. 강구하는 것을 요청한다.

제8조 개설자 혹은 관리자 관리자

제1항

제2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원에게 국립대학부속시설인 진료시설에 입회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3조 국립대학부속시설인 진료시설에 관하여는 법제18조와 제21조(제2호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농림어업금융공고 부터의 자금의 대부에 관한 이율등) 법제15조제2항의 각령에서 정하는 이율,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의 범위는 이율에 있어서는 최고 년8부5리,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거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 칙

1. 이각령은 수의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제45호)의 시행일(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농림부조직령(1952년 각령제3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15호를 제16호로,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3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14 수의료법(1992년 법률제46호)의 시행에 관한것.

제73조제1호와 제2호중 「가금」을 「가금」으로, 동조제8호중 「수의사 면허심의회」를 「수의사심의회」로 고치며, 동호를 동조제9호로, 동조중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하며, 동조제5호중 「의외」를 「그 이외」로 고치며,

특 집

동호를 동조제6호로, 동조중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3호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4. 수의료법의 시행에 관한것.

제86조제3항중 「수의사면허심의회」를 「수의사심의회」로 고친다.

수의료법시행규칙(獸醫療法施行規則) (1992년 8월25일 농림부령제44호)

최종개정 : 1992년 11월 11일 농림부령제53호

<p>차례</p> <p>제1장 진료시설의 개설등(제1조-제5조)</p> <p>제2장 진료용방사선의 방호(제6조-제20조)</p> <p>제3장 시·도 계획등(제21조-제23조)</p> <p>제4장 광고제한의 특례(제24조)</p> <p>제5항 잡칙(제25조-제29조)</p>
--

제1장 진료시설의 개설등

제1조(진료시설의 개설의 제출) 수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앞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자의 성명과 주소(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명칭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와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내용
2. 진료시설(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함. 이하같음.)의 명칭
3. 개설한장소
4. 개설한 년월일
5. 진료시설의 구조설비의 개요와 평면도

6. 관리자(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자를 말함. 이하같음)의 성명과 주소(개설자가 수의사로서 진료시설을 관리하고 있을때에는 그내용)
7. 진료업무를 하는 수의사의 성명
8. 진료업무의 종류
9.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가부행위
10.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3조의 후반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료시설의 휴지(休止)의 경우에 있어서는 휴지기간과 휴지한 사유, 진료시설의 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한 기일과, 폐지한 사유, 제출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진료시설의 구조설비의 기준)

법 제4조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시설의 구조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육동물(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함. 이하같음.)의 탈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2. 전염성질병에 걸려있는 의심이 있는 사육동물을 수용하는 설비에는 다른 사육동물에의 감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는것.
3. 소독설비를 하는것.
4. 조제를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한다.

- 가. 채광, 조명과 환기를 충분히 하고 또한, 청결을 유지하는것.
 나. 냉암저장을 위한 설비를 하는것.
 다. 조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는것.
5. 수술을 실시하는 시설은, 그 내벽과 바닥이 내수성의 물질로 싸여져 있어야함.
 6. 방사선에 관한 구조설비기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것.

제3조(관리자의 준수사항등) 법제5조제2항의 농리부령에서 정하는 진료시설의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육동물을 수용하는 설비(이하「수용설비」라함.)에는 수용가능한 마릿수를 초과하여서 사육동물을 수용하지 아니할것.
2. 수용설비가 아닌 장소에 사육동물을 수용하지 말것.
3. 사육동물의 탈주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수용설비내부에 있어서의 다른 사육동물에의 감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각성제취체법(1951년법률제252호), 마약과 향정신약취체법(1953년 법률제14호)과 약사법(1960년 법률제145호)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주의를 할것.
6. 항상 청결을 유지할것.
7. 채광, 조명과 환기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8. 방사선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6조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에 정하는 바에 할것.

②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전항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기타의 종업원을 감독하고, 필요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③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이부령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진료시설의 구조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진료시설의 개설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왕진진료자등에 대한 적용등) 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용기기등은 다음과 같다.

1. 각성제취체법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성제원료
2. 마약과 향정신약취체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마약과 동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약
3. 정격출력(定格出力)의 관전압(峯高値)로 한다. 이하같은.)이 10킬로볼트 이상의 진료용 엑스선장치(정격출력의 관전압이 1,000킬로 볼트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엑스선장치」라 한다.)

제5조 법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제5조 제2항의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3조제1항제5호와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장 진료용 방사선의 방호

제6조(엑스선장치의 계출)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그진료시설에 엑스선장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당해진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엑스선장치의 사용을 폐지하였을때 또는 계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진료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2. 엑스선장치의 제작자명, 형식과 대수
3. 엑스선고전압 발생장치의 정격출력(定格出力)
4. 엑스선장치와 엑스선진료실의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구조설비와 예비조치의 개요
5. 엑스선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성명과 엑스선진료에 관한 경력

제7조(엑스선진료실) 엑스선 진료실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항시 출입하는 장소에는 1센티미터 선량 다량이 1주간당 1밀리시이벨트 이하로 되도록 차폐물 설치할것.
2. 엑스선 진료실이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를 할것.

제8조(엑스선장치의 방호)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장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엑스선관의 용기, 조사통과 조이게는 이용선수 이외의 엑스선의 조사 선량이 엑스선관의 초점부터 1미터 거리에 있어서, 치료용엑스선장치이외의 엑스선장치에 있어서는 1시간당 25.8마이크로 퀴론 매킬로그램이하로 되도록 차폐를 할것. 이용선수의 방사각이 그 사용목적용 2. 달성하는데 필요되는 각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정격출력의 관전압이 60킬로볼트이상의 3. 엑스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선수의 총여과가 알루미늄 다량 그 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것.

②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투시용엑스선장치에 관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것 이외에 다음내용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투시중엑스선관에 1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통하였을 때에는, 즉시 엑스선관회로를 개방위치로 하게하는 자동장치를 설치할것.
2. 형광판에는 이것을 투과한 엑스선의 조사선량율이 엑스선관의 초점부터 1미터거리에서 2,064나노퀴론매킬로그람매시 이하로 될 수 있는 납유리를 부착시킬것.

③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치료용 엑스선장치

(근접조사치료장치를 제외함.)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것 이외에 여과판을 뽑아냈을때에 엑스선관 회로를 개방위치로 하는 여과판보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사항의 게시)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실의 눈에 띄우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호(사용장소의제한) 엑스선장치는 엑스선진료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벽기타 차폐물의 외측에 1센티미터 선량다랑울이 20마이크로 시벨트매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차폐된 상태에서 엑스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엑스선장치를 이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엑스선장치를 엑스선 진료실에서 사용함으로써 심하게 사용목적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업무의 성질상 곤란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구역)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1센티미터 선량당량이 1주간당 300마이크로시어벨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관리구역으로 하여 당해구역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필요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전항의 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부지의 경계등에 관한 방호)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실 또는 그주변

에 적당한 차폐물을 설치하는등의 조치를 강구토록하여 진료시설의 부지내의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과 진료시설의 부지의 경계에 있어서는 1센티미터 선량당량이 3개월간당 250마이크로시어벨트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엑스선진료종사자들의 피폭방지)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종사자들(엑스선장치의 취급, 관리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같음.)이 받는 실효선량당량이 1년간당 50밀리시어벨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종사자들이 받는 조직선량당량이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는 1년간당 150밀리시어벨트를 그 이외의 조직에 대하여는 1년간당 500밀리시어벨트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자(임신불응으로 진단된 여자를 제외함. 이하같음.)의 엑스선 진료종사자들(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함.)의 복부에 받는 조직선량당량에 대하여는, 3개월간당 13밀리시어벨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④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신으로 진단받은 여자의 엑스선 진료종사자 등의 복부에 받는 조직선량당량에 대하여는, 임신으로 진단받은 때부터 출산

할때까지의 기간내에 10밀리시이벨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을 하는 엑스선진료종사자등(여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한계를 초과하여서 작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작업에 종사하는 기간에 받는 실효선량당량은, 100밀리시이벨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선량당량의 측정등) 전조의 실효선량당량과 조직선량당량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또는 계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수치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량당량의 측정은 1센티미터선량당량, 3밀리미터선량당량과 70마이크로미터선량당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수치를 구할수 있다.
2. 선량당량의 측정은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에는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할수가 있으며, 또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서도 측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하여 이들의 수치를 수할수 있다
3. 선량당량은 흉부(여자에 있어서는 복부)에 대하여 측정할것. 다만 몸중심부

(인체의 부위중, 두부, 경부, 흉부, 상완부, 복부와 대태부를 말함. 이하같은.)를 두부와 경부, 흉부와 상완부, 복부와 대태부로 3구분하였을 경우에 피폭되는 선량당량이 최대량으로 될 염려가 있는 구분이 흉부와 상완부(여자에 있어서는 복부와 대태부) 이외인 때에는 그 구분에 해하여도 측정하며, 또한 피폭되는 선량당량이 최대량으로 될 염려가 있는 인체부위가 몸중심부 이외의 부위인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몸중심부 이외의 부위에 대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70마이크로미터선량당량을 측정할것.
5. 선량당량의 측정은 관리구역에 출입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실시할것.

제15조(엑스선진료종사자등에 관한 선량당량의 기록)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종사자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선량당량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실효선량당량의 매3개월마다와 매1년마다의 합계(여자에 있어서는 매 1개월마다, 매3개월과 매1년마다의 합계)
2. 인체의 조직별의 조직선량당량의 매3개월마다와 매1년마다의 합계(여자의 복부에 있어서는 매1개월마다, 매3개월과 매1년마다의 합계)

제16조(엑스선진료 종사자들의 준수사항)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진료 종사자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중 어느 한가지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준수시켜야 한다.

1. 차폐벽기타 차폐물을 사용하여 엑스선의 차폐를 할것.
2. 원격조작장치 또는 감자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엑스선장치와 인체와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할것
3. 인체가 엑스선에 피폭되는 시간을 짧게 할것.
4. 보정은 보정용구 또는 의약품으로 할것. 다만 보정용구 또는 의약품으로 보정이 곤란한 경우, 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엑스선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엑스선 진료실의 출입구에 그 내용을 표시 할것.
6. 엑스선장치를 엑스선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때에는 엑스선관의 초점으로 부터 3미터이내의 장소에 필요한 사람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람이 출입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조사하며 또는 엑스선을 차폐하는 조치를 강구할것.

제17조(엑스선장치의 정기검사)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엑스선장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엑스선 진료실등의 측정)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장소에 대하여 진료를 개시하기전에 1회와 진료를 개시한 이후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매1회(엑스선장치를 고정시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하는 방법과 차폐벽기타 차폐물의 위치가 일정하게 되어있을때에는 매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1회) 엑스선의 양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진료실
2. 관리구역의 경계
3. 진료시설의 부지내의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
4. 진료시설의 부지의 경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엑스선의 량의 측정은 1센티미터 선량 당량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3밀리미터 선량 당량율에이 1센티미터 선량당량율의 3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밀리미터 선량 당량율에 대하여 실시하며 또한 70마이크로미터 선량당량율이 1센티미터 선량 당량율에 10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70마이크로미터 선량 당량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엑스선의 량의 측정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것이 몹시 어려울때에는 계산

에 의하여 이들의 수치를 구할수가 있다.

제19조(기장)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엑스선장치의 사용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매1년마다 이를 밀봉하고 밀봉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때의 조치)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지진, 화재 기타 재해 혹은 도난 기타의 사고에 의하여 방사선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당해 진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고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시·도계획등

제21조(시도계획) 법제11조 제1항의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함)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표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것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수의료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의하고자 할때에

는 그 협의서에 당해 시·도계획과 여기에서 정하는 법 제11조 제1호와 제3호에 설명서를 첨부하여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기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정은 정비를 하고자 하는진료시설에 관한 1년간의 진료업무량에 대하여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닭, 매추리 기타 축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육동물의 진료의 업무량의 비율이 50%이상 이 될때에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계획의 변경등) 법 제1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자(이하<인정자>라 함)는 그 인정에 관계되는 동항의 진료시설 정비계획(다음항에서 <인정진료시설 정비계획>이라 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② 시도지사는 인정자가 인정진료시설정비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었을때에는 그 변경된 이후의 것)에 따른 진료시설의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제4장 광고제한의 특례

제24조(광고제한의 특례)법 제17조 제2항 앞에서 말하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축개량증식법(1950년 법률제209호) 제3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가축 제내수정란의 채취를 하는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1951년 법률제165호)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축 방역원”이라는것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자주적인 조치를 실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제34의 법인으로부터 그 조치에 관한 진료를 하는 것을 위탁받고 있다는 것.
4. 농업재해보상법(1947년법률 제185호)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함)혹은 농업공제조합 연합회부터 동법 96조의2 제1항(동법 제12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하는 시설로서 진료를 하는것을 위탁받고 있는것 또는 조합원등(동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등을 말함)의 위탁을 받아서 공제금의 지불을 받을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조합등과 체결하고 있다는것

제5장 잡칙

제25조(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의 자격)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수의료에 관한 법령과 진료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26조(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에 의한 지도) 전조의 직원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였을때에는 진료시설의 구조설비의 개선관리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도를 하는것으로 한다.

제27조(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의 신분증명서의 양식)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28조(청문의 절차)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직원이 주재하는것으로 한다.

제29조 시·도지사는 청문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1주일전까지 그명령의 내용과 이유, 청문일시와 장소를 그명령에 관련되는자(이하<피청문자라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피청문자는 청문에 대리인을 출석시킬수 있다. 이경우에는 피청문자는 청문의 날의 전까지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서면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피청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두 할 수 없을때에는 미리 피청문자가 진술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는것으로서 청문에 있어서의 진술에 대신할수 있다.

④ 피청문자와 그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청문자로부터 청문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인한 출원이 있었을때에는 법제18조 제1항의 청문을 한것으로 볼수있다.

부 칙

1. 이 부령은 수의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 제45호 이하<개정법> 이하함)의 시행일(199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부령의 시행때에 이미 개정법에 의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고 있는 진료시설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까지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1992년 10월 22일 농림부령 제52호>

제1조(시행일)이부령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후의 제2장의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개정후의제2장의 규정의 시행때에 이미 엑스선장치를 비치하고있는 진료시설에 대한 개정후의 제6조와 제18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후의 제6조

중<진료시설에 엑스선장치를 설치하였을때에는 10일이내에>로 되어있는 것은 <1993년 5월 1일부터 10일이내에>로, 개정후의 제18조 제1항중 <진료를 개시하기전에 1회와 진료를 개시한후>로 되어있는것은 <1993년 5월1일이후>로 한다.

부칙<1992년 11월 11일 농림부령 제53호> (초)

1. (시행일) 이 부령을 가축개량 증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법률 제47호)의 시행일(1992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수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 - (앞면)

수의료법에 의한 검사원증	
제 호	
년 월 일 발행	
사 진	(한글)
발행기관인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의료법(1992년 법률 제46호)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직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	
소속장 직	성명 (인)

(뒷면)

수의료법(초)
(보고의 정수와 현장검사)

제8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설자 혹은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그직원에게 진료시설에 입회하여 그 구조설비,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아니된다.

수의사심의회의령(獸醫事審議會令)
(1949년 9월 12일 각령 제 330호)

제1조(임기등) 수의사(事)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의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원은 비상근으로한다.

제2조(회장) 위원에 의하여 회장으로 호선된자는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었을때에는 미리 그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특별위원과 전문조사원) 심의회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시키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과 전문조사원은 각각 해당되는 특별한 사항 또는 전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특별위원은 그 특별한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종료되었을때 전문조사원은 그 전문사항에 관한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과 전문조사원은 비상근으로한다.

제4조(분회(分會)) 심의회는 그정하는바에 따라 분회를 둘수 있다.

② 분회에 속하게 하는 위원 특별위원과 전문조사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분회에 그 분회에 소속하는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분회장을 둔다.

④ 제2조의 규정은 분회장에 준용하는 것으로한다.

⑤ 심의회는 그 정하는바에 따라 분회의 결의로서 심의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5조(의사) 심의회는 위원과 의사에 관계가 있는 특별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의원과 의사와 관계가 있는 특별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바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분회에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사무) 심의회의 사무는 농림부 축산국 위생과에서 처리한다.

제7조(잡칙) 이 각령에서 정하는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부 칙

1. 이 각령은 수의사법 시행일 (194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의사 면허심의회령 (1949년 각령 제157호)는 폐지한다.
3. 수의사가 조직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학식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이 각령 시행 최초로 위촉되어진 위원중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자의 임기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지명한다.
5. 심의회는 이 각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수의사법 부칙 제18항에서 규정하는 수의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1978년 5월 23일 각령189호>

1. 이 각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각령의 시행후 1978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중에 위촉되는 수의사면허 심의회의 위원(수의사면허 심의회령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결위원을 제외함)의 임기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 10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1978년 7월 5일 각령제 제 282호>(초)

제1조(시행일) 이 각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8월 7일 각령 275호>

1. 이 각령은 수의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개정법>이라함)의 시행일 (199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각령의 시행때에 이미 수의사면허심의회 의 위원인자는 그 당시 개정법에 의한 개정후의 수의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자로 보며 그 임기는 개정후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의 수의사 면허 심의회의 위원으로서의 잔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대 수**